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14년 9월 일 (제334회)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김학철 의원 외 6명
발의연월일	2014년 9월 일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학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4년 9월 일

발 의 자 : 김학철·이양섭·김인수·박우양·
이의영·황규철·김봉희 의원(7명)

1. 제안 이유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운용 및 지원 조례를 현실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현실에 맞게 조문 개정(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6조 등)

3. 조례안 : 붙 임

4. 관계법령 발췌 : 붙 임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6. 관련부서 협의 : 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와 협의

7. 입법예고사항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함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단” 이란 충청북도가 일정액을 출연하여 법에 따라 설립한 충북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 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 또는 충청북도 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사업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본재산의 용도)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출연금 등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재단의 정관, 업무방법서 등에서 정한 중소기업 등의 금전채무 보증
2. 그 밖에 보증업무와 관련되어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를 관련기관, 단체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행정지원) 도지사는 재단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 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생략)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재단” 이란 충청북도가 일정액을 출연하여 법에 따라 설립한 충북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2. “재단” 이란 충청북도가 일정액을 출연하여 법에 따라 설립한 충북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업무)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 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	8.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 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 또는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사업

현 행	개 정 안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제4조 ~ 제5조(생 략) <u>제6조(기본재산의 용도) ① 제5조에 따라 지원한 출연금 등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u>	제4조 ~ 제5조(현행과 같음) <u>제6조(기본재산의 용도) ① 제5조제1 항에 따라 조성된 출연금 등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u>
<u>1. 재단의 정관, 업무방법서 등 에서 정한 중소기업 등의 금전 채무에 대한 보증</u> <u>2. 그 밖에 보증업무와 관련한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 한 사업</u>	<u>1. 재단의 정관, 업무방법서 등 에서 정한 중소기업 등의 금전 채무 보증</u> <u>2. 그 밖에 보증업무와 관련되어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u>
제7조 ~ 제8조(생 략)	제7조 ~ 제8조(현행과 같음)
제9조(사업평가) ① (생 략) <u>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를 관 련기관, 단체 또는 관계전문가에 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u>	제9조(사업평가) ① (현행과 같음) <u>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를 관 련기관, 단체 또는 관계전문가에 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u>

현 행	개 정 안
<p>③ (생 략)</p> <p><u>제10조(행정지원) 도지사는 재단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 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u>제10조(행정지원) 도지사는 재단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 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u></p>

관 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